

뉴욕 주 형사정의서비스과(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미 법무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수혜기관의 고용인, 의뢰인, 고객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제기하는 차별 행위 민원의 접수 및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절차

목적

본 문서의 목적은 미 법무부(DOJ)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수혜기관의 고용인, 의뢰인, 고객 및 프로그램 참여자가 뉴욕주 형사정의서비스과(이하 “DCJS”라 지칭함)에 차별 행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차별 행위 민원에 대응하는 DCJS의 절차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DOJ 재정지원금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수혜기관이 해당 연방 민권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서면 관리 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혜기관이 서비스 또는 고용 행위에 있어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책 및 관련 법률

DCJS는 프로그램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성별, 종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및/또는 연령과 상관 없이 DOJ가 재정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수혜기관은 이들 요소를 이유로 하여 고용 차별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책을 준수합니다. 이를 위해, DCJS는 연방 재정지원 대상인 수혜기관이 다음 법령 및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1964년 민권법 제6장(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PL 88-352) (42 U.S.C. §§ 2000d-2000d-7)
- 1968년 종합범죄방지및치안법(The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of 1968) (PL 90-351)
- 1973년 재활법 제504조(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PL 93-112) (29 U.S.C. § 794)

- 1972년 남녀체육활동차별방지법 제9장(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 of 1972) (PL 92-318) (20 U.S.C. §§ 1681-1688)
- 1990년 미국장애인법 제2장(Title I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PL-101-336) (42 U.S.C. §§ 12131-12165)
- 1975년 연령차별금지법(The Age Discrimination Act of 1975) (PL 94-135)
- 종교기관의 동등대우에 관한 DOJ 법규(The DOJ Regulations on the Equal Treatment for Faith-Based Organizations) (28 C.F.R. part 38) 및
- 행정명령 13166호, 제한적인 영어구사 능력(Executive Order 13166, Limited English Proficiency)

이 법률들은 한 개인이 이 법률들에 의해 보호 받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나서거나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차별 및 보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용어 정의

DCJS 차별 행위 민원 정책 및 절차를 위해 다음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 “적극적조치 관리자(AAA)”란 접수된 민원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CJS에서 임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국가, 연령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사람에게 가하는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불공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3. “보복”이란 민원인이 불법적인 차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강등시키거나, 해고하거나 또는 그 밖에 부정적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DCJS에 차별 행위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관한 적격성 기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국가, 연령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DCJS의 수혜기관들에 의해 관리되는 연방 재정지원 프로그램 또는 행위에 참여를 거부당하거나, 이 프로그램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차별을 받거나, 또는 이와 관련한 취업을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본 문서에 명시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DCJS에 차별 행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DCJS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차별 행위 민원 내용

민원인은 DCJS에 서면으로 민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인은 이메일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민원을 제출할 경우 서명을 실시해야 하며, 또한 다음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 민원인의 이름 및 연락 정보
-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단체 이름
- 연락 담당자 이름을 포함한 관련 단체의 연락 정보(가능한 경우)
- 민원 사유(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국가, 연령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 차별 행위 발생 일자(들)
- 민원인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든 사건 또는 상황 설명
- 민원인이 원하는 해결 방법

본 정책 및 절차 그리고 민원 차별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criminaljustice.ny.gov/crimnet/mail.htm> 또는

<http://www.criminaljustice.ny.gov/ofpa/contact.htm>

민원 신청서는 이메일(civilrights@dcjs.ny.gov)로 제출해도 됩니다.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이메일 제출 자체가 서명으로 인정되므로 민원 신청서에는 별도의 서명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민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NYS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Office of Legal Services
4 Tower Place
Albany, NY 12203

민원인이 민원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DCJS에 민원을 제기할 때 적용되는 기타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필수 정보가 담긴 서신 또는 이메일이면 충분합니다.

DCJS의 민원 처리

1. DCJS의 적극적조치 관리자(AAA)는 민원 신청서를 접수하는 대로 DCJS의 법률자문사무국과 협의하여 민원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관련 정보가 제출되었는지, 민원이 적시에 이뤄지고 차별 민원 행위에 대한 재판 관할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시 말해, 민원 신청서에는 DOJ 재정지원수혜기관에 의해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국가, 연령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DCJS는 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3. DCJS는 미 법무부 산하의 정의 프로그램 사무국(Office of Justice Programs) 민권 사무국(Office of Civil Rights)(이하 "OCR")에 민원 신청서를 전달하고 OCR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업무 조정에 임하게 됩니다.
4.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DCJS가 차별 행위 민원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이 민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정보의 지속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민원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DCJS 외에 다른 기관에 차별 행위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일반 절차 및 요건

DCJS에 차별 행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과 연방법을 집행하는 다음의 주 및 연방 행정기관과 법원에도 차별 행위 민원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미 법무부 민권 사무국(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Civil Rights (OCR))
<http://www.justice.gov/actioncenter/complaint.html>
- 평등고용기회 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http://www.eeoc.gov/employees/charge.cfm>
- 뉴욕 주 인권과(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DHR))
<http://www.dhr.state.ny.us/how to file a complaint.html>

차별 행위 민원을 제기하려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주 또는 연방 행정기관 또는 법원과 관련 시효에 관해 협의해야 합니다. 관련 시효 내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할 경우 민원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수혜기관의 차별 처리 절차

연방 법규에 의하면, 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수혜기관은 직원, 의뢰인, 고객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제기하는 차별 행위 민원을 처리하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혜기관은 개인의 민원 제기 방법, 단체의 민원 조사 방법, 조사 실시 담당자, 조사 결과 작성 담당자 및 조사 결과 발표 기한을 다루는 단계별 서면 고충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DCJS 담당자는 수혜기관을 감사하여 위와 같은 업무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DCJS는 수혜기관에게 결함사항을 통지하고 시정조치 권고를 내립니다. 불만 행위 민원에 대한 수혜기관의 대응으로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민원 접수를 알리는 서면 통지문을 보낸다.
2. 해당 민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를 전달한 외부 조사기관(DCJS, DHR, EEOC, OCR)을 표시한다.
3. 조사 수행을 위해 외부 조사기관에 민원을 전달하는 기간을 명시한다.

4. 민원인에게 차별 행위 민원을 DCJS, DHR, EEOC, OCR 또는 법원에 직접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린다.
5. 수혜기관의 차별 행위 민원 절차를 제공한다.

수혜기관은 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차별 행위 민원이 있을 경우 이를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DCJS에게 서면 통지하고 의뢰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교육

DCJS는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성별, 장애 또는 연령을 이유로 서비스 또는 고용 행위에서 차별하지 않을 의무에 대한 교육을 수혜기관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수혜기관의 요청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모니터링 방문의 결과로서 기술 지원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는 세션 시 제공되며 DCJS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적절한 교육 기록은 해당 법률 또는 법규의 규정대로 유지됩니다. 수혜기관은 모든 직원, 의뢰인, 고객 및 프로그램 참여자가 기존의 차별 행위 민원 프로세스를 잘 숙지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혜기관은 해당 기관 웹 사이트에 절차를 게시하고, 의뢰인 지원 자료에 차별 정책에 대한 참조문을 제공하며, 교육 시 절차를 담은 인쇄물을 제공하고, 또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으로 절차를 알리는 방식으로 직원, 의뢰인, 고객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